

2025년도 교육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보고

I 감사개요

□ 감사배경

- 위법·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근절하고, 개선 위주의 예방적 감사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제20조(자료제출 요구), 제21조(실지감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사)
- 『여수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적용범위), 제4조(감사의 종류 등)
- 2025년 여수시 연간감사 계획(감사담당관-12811, 2024.12.4.)

□ 감사기간 및 대상

- 감사기간 : 2025. 3. 17.(월) ~ 3. 28.(금) / 10일간 * 자체감사 이력 없음
- 감사대상 : 2개과(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
- 감사범위 : 2021. 1. ~ 2025. 2.까지 보조금 지원분야 전반 등
 - ※ 감사원, 전남도 감사 등 기 감사사항은 대상 업무에서 제외
 - ※ 지적사항 원인이 이전 업무 처리와 연계 시 범위 확대
- 감사방법 : 서면감사 * 필요시 실지감사 실시
- 감사반 : 회계감사팀(3명)

□ 감사 중점사항

- 회계처리 절차 미이행, 보조금 부적정 사용 등 확인
- 교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및 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집행실태 및 정산 적정 여부,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 여부
- 보조사업 계약 및 사업계획 임의 변경 여부
- 지원부서의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등 사후관리 적정 여부 등

□ 총 평

○ (감사목적) 보조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 ▶ 이번 특정감사는 10여년간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및 관행을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회계처리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를 확인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였음

○ (감사결과) 9건(주의 6, 시정 2, 개선 1)을 지적하여 재정상(436,540원 회수) 조치

<평생교육과>

- ▶ 평생교육과 직원들은 지역 인재 양성 및 행복교육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분야 지원을 위해 주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보조사업(44개 세부사업) 외 15개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중으로 보조금 정산 및 신청·교부가 연초에 집중되는 등 보조사업 업무에 부담이 있음
- ▶ 관리 지침(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성실하게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일부 업무 담당자의 관련 규정 숙지 부족, 관행적 추진 등으로 7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음
 - 보조금집행(2) : 보조사업 계약 업무 관련 규정 위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 보조금정산(4) : 강사수당 원천징수 부적정, 강사수당 이중 청구, 정산 보고 소홀, 지출증빙서류 미비
 - 지도·감독소홀(1) : 민간행사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미비

- ▶ 다만, 교육경비보조사업의 경우 100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산서류를 간소화(11종→4종)하여 보조사업 세부집행 내역, 지출증빙서류 적정 여부 등을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도서관운영과>

- ▶ 도서관운영과 직원들은 사립작은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 등 2건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책 읽는 환경조성을 위한 독서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잘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일부 업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부족 등으로 2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음
 - 보조금정산(1) :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활동비 원천징수 미이행
 - 기타(1)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미이행
- ▶ 새마을이동도서관의 경우, 현재 7곳의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어린이 도서관('26년 예정), 작은도서관 39곳(공립 8, 사립 31) 등이 운영됨에 따라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이용률 감소 및 각 도서관과의 지역 중복 등의 문제로 향후 신규 수요처 발굴 또는 점진적인 사업 축소·폐지 고려가 필요함

○ (결과조치) 교육분야 2개과를 감사한 결과 9건(주의 6, 시정 2, 개선 1)을 지적하여 재정상 436,540원을 회수 조치하고자 하며, 지적된 9건에 대해 처분 조치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임.

□ 처분계획

○ 총괄

(단위 : 건/원)

| 부서명 | 행정상조치 | | | 재정상조치 | | 신분상조치 | |
|--------|-------|----|----|---------|----|-------|----|
| | 주의 | 시정 | 개선 | 회수 | 지급 | 주의 | 훈계 |
| 계 | 6 | 2 | 1 | 436,540 | | | |
| 평생교육과 | 5 | 2 | | 436,540 | | | |
| 도서관운영과 | 1 | | 1 | | | | |

▶ (행정상·재정상 조치) 주의 6, 시정 3, 개선 1 / 재정상 회수 436,540원

▶ (신분상조치) 0건

- 이번 감사 지적사항은 관련 법규 숙지 부족, 관행적 추진,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등 경미한 사항임

→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통해 동일·유사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지도함이 바람직함

⇒ 따라서, 신분상 조치 없이 행정상, 재정상 조치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적사항 목록

| 구분 | 주요 지적사항 | 행정상조치 | | | 재정상 조치(원) | | |
|------------|----------------------------|-------|----|----|-----------|----|----|
| | | 주의 | 시정 | 개선 | 회수 | 지급 | 반납 |
| 부서 | 총계 : 9건 | 6 | 2 | 1 | 436,540 | | |
| 평생 교육과 | 소계 | 5 | 2 | | 436,540 | | |
| | 강사수당 원천징수 부적정 | | 1 | | 116,540 | | |
| | 여수평생학습박람회 보조사업 계약 업무 규정 위반 | 1 | | | | | |
| | 강사수당 이중 청구 보조금 정산 소홀 | | 1 | | 320,000 | | |
| |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 1 | | | | | |
| | 여수000000000 사업 정산보고 소홀 | 1 | | | | | |
| |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 수행상황 점검 미비 | 1 | | | | | |
| | 보조금 정산검사 시 지출증빙서류 점검 소홀 | 1 | | | | | |
| 도서관 운영과 | 소계 | 1 | | 1 | | | |
| | 시립작은도서관 운영지활동비 원천징수 미이행 | | | 1 | | | |
| |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미이행 | 1 | | | | | |

Ⅲ

지적사항 세부내용

1

평생교육과

유형 1

강사수당 원천징수 부적정

■ 관련법규

-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의무)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함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6항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함
- ▶ 따라서, 강사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및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적정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함

■ 지적사항

- 평생교육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강사수당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시정조치 없이 정산을 완료하였음

■ 조치요구 : 시정(116,540원)

- 원천징수 후 납부영수증 제출

유형 2

보조사업 용역계약 업무 관련 규정 위반

■ 관련법규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면,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서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지적사항

- 평생교육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35,200천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역계약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정산을 완료하였음

■ 조치요구: 주의

-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계약체결을 하도록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유형 3 강사수당 이중 청구 보조금 정산 소홀

■ 관련법규

-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정산검사) 제2항에 따르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또는 교부조건 위반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

■ 지적사항

-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학습박람회에 참여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에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수당과 이중으로 320천원의 강사수당이 지급됨을 확인하지 못하고 시정조치 없이 정산을 완료하였음

■ 조치요구: 시정(320,000원)

- 이중지급 강사수당 환수(320,000원)

유형 4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 관련법규

- ▶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여수교육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 지적사항

- 평생교육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OO센터운영 협의회비를 전직원 회식에 교육경비와 학교예산을 혼용 사용하는 등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시정조치 없이 정산을 완료하는 등 지도·감독에 소홀하였음

■ 조치요구: 주의

- 보조금 정산 시 보조사업자가 사업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유사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유형 5 보조사업 정산 보고 소홀

■ 관련법규

- ▶ 「지방보조금법」 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

-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 지적사항

- 평생교육과에서는 2021 ~ 2024년 ‘여수 0000 페스티벌’ 보조금 정산에 있어 승인 없는 사업계획 변경, 지출 증빙자료 부적정 등 실적보고가 미흡하였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정산을 승인

■ 조치요구: 주의

-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에게 관련규정(사업계획 변경 시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 지출 증빙자료 첨부) 사전 안내 등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철저

유형 6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 수행상황 점검 미비

■ 관련법규

- ▶ 「지방보조금법」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
-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점검표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하여는 행사 당일 출장하여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 지적사항

- 평생교육과에서는 2021 ~ 2024년 기간 동안 여수 0000 페스티벌 등 9개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사당일 출장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소홀

■ 조치요구: 주의

-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 실시

■ 관련법규

-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과목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카드 포함)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하며,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지적사항

- 평생교육과에서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지출결의서, 담당자와 대표자 서명날인,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물품검수조서 또는 사진대장, 신용카드 영수증 등) 일부 누락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출결의서, 강사자격확인서(이력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교육 횟수에 맞는 강의자료, 참여자 출석자료(활동일지) 누락 등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보조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정산업무 처리에 소홀

■ 조치요구: 주의

-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도서관운영과

유형 1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활동비 원천징수 미이행

■ 관련법규

-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의무)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함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제6항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함

■ 지적사항

- 도서관운영과에서는 2021 ~ 2024년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활동비 보조금 정산을 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 없이 정산을 완료하였음

■ 조치요구: 개선

-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및 재발방지교육 실시

유형 2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미이행

■ 관련법규

- ▶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2조(성과평가)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12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 시장은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에게 해당사무를 다시 민간위탁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제14조(재계약)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1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 **지적사항**

- 도서관운영과에서는 2021년, 2023년 새마을이동도서관 성과평가를 미이행하였음

■ **조치요구: 주의**

- 관련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교육 실시